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52

발의연월일: 2025. 5. 20.

발 의 자: 정춘생·강경숙·황운하

김선민 • 이해민 • 서왕진

용혜인 · 김준형 · 차규근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 정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 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 음.

특히,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, 내란·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확정된 자에 대해까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,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,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 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(안 제4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
- 2.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4조(경호대상) 🤇	D ~	3	(생	제4조(경호대상) ① ~ ③ (현행
략)			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
			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			사람은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
				에서 제외한다.
				1.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
				2.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
				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